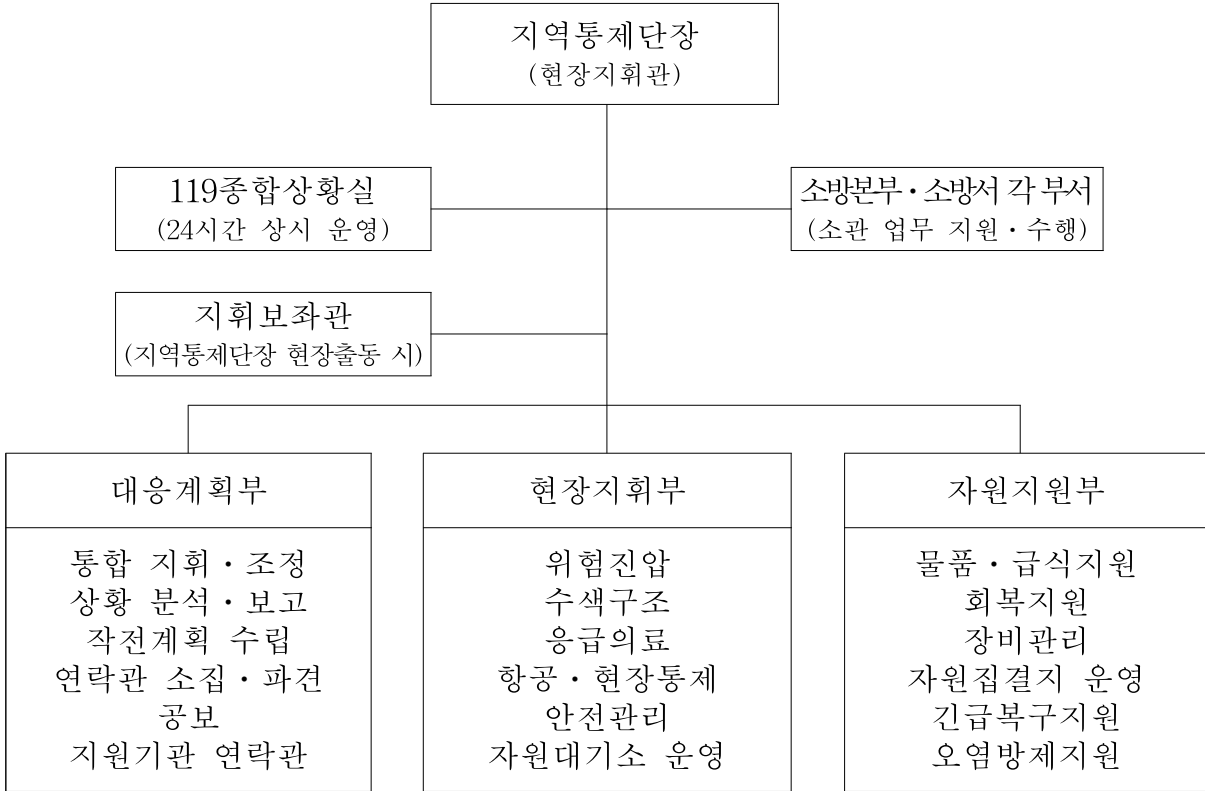
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4] <개정 2024. 1. 22.>

지역통제단의 구성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지역통제단 조직도



2. 부서별 임무

부서별	임무		
지역통제단장	가.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·조정·통제 나. 시·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		
119종합상황실	가. 지역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나.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다. 소방청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 등에 상황 전파 라. 대응계획부(공보)와 공동으로 긴급대피, 상황전파, 비상연락 등 실시		
소방본부·소방서 각 부서	가. 부서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나. 각 소속 기관·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		
지휘보좌관	가. 지역통제단장 보좌 나. 그 밖의 지역통제단장 지원활동		
대응계획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통합지휘·조정</td> <td>가.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나.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(소속기관별 임무</td> </tr> </table>	통합지휘·조정	가.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나.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(소속기관별 임무
통합지휘·조정	가.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나.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(소속기관별 임무		

	<p>분담 및 이행)</p> <p>다. 전반적인 자원 활용 조정</p>
<p>상황분석 · 보고</p>	<p>가. 재난상황정보 수집·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 순위 설정</p> <p>나. 재난상황 예측</p> <p>다. 작전계획 임무담당자와 공동으로 대응활동 계획 수립</p> <p>라.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 상황 보고</p>
<p>작전계획 수립</p>	<p>가.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</p> <p>나.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</p>
<p>연락관 소집·파견</p>	<p>가. 지원기관 연락관 소집</p> <p>나. 현장상황관리관 파견</p> <p>다. 지원기관 지원·협력에 관한 사항</p>
<p>공보</p>	<p>가. 긴급 공공정보 제공과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비상방송시스템 가동</p> <p>나.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119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긴급대피, 상황 전파, 비상연락 등 실시</p>
<p>지원기관 연락관</p>	<p>가. 지역통제단과 공동으로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활동 조정·통제</p> <p>나.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별 긴급구조 활동 지원</p>
<p>현장지휘부</p>	<p>가. 시·도 차원의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</p> <p>나. 각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의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</p>
<p>위험진압</p>	<p>가. 시·도 차원의 수색 및 인명구조 등 지원</p> <p>나. 각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의 수색·인명 구조 및 지원</p>
<p>수색구조</p>	<p>가. 시·도 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 활동</p> <p>나.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</p> <p>다. 사상자 분산·이송 통제</p> <p>라.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자료 제공</p>
<p>응급의료</p>	<p>가. 항공대 운항통제 및 비상헬기장 관리</p> <p>나.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</p> <p>다. 시·도 및 시·군·구 대피계획 지원</p> <p>라.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</p>
<p>항공· 현장통제</p>	<p>가.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</p> <p>나.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</p>
<p>안전관리</p>	<p>자원대기소 운영</p>
<p>자원대기소 운영</p>	

자원지원부	물품 · 급식지원	가. 긴급대응활동 참여자에 대한 물품 지원 나.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
	회복지원	긴급대응활동 참여자에 대한 회복 지원
	장비관리	가.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나.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다.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라.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
	자원집결지 운영	현장인력 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
	긴급복구지원	가. 시·도 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나.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 다.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
	오염 · 방제지원	가. 시·도 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 활동 나.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의 지휘·조정·통제

비고

1. 지역통제단 조직은 재난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
2. 부서별 임무는 예시로서, 재난상황에 따라 임무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추가할 수 있다.